

제410회 국회(정기회) 종합 국정감사

서 면 답 변 서

2023. 11.

법 제 처

- 목 차 -

I . 이탄희 위원

1. 법제처는 법령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경과보고서 작성 기준을 마련 하겠다고 의원실로 대면보고 하였는데, 이를 위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의원실로 보고할 것 1
2. 법제처가 감사 당일 지적 이후 서면으로 제출한 법제처장의 4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에서도 고가 식당, 인원 미식별, 문제의 집행이 확인됨. 이와 관련하여 투입 예산 환수를 포함한 후속대책, 법제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정상화 방안을 보고할 것 2

II . 장동혁 위원

1. 법률안의 유형이나 중요도 시급성 등을 감안한 처리 기간을 정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으로 실제 접수부터 처리까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바랍. 7
2.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현황 8
- 3-1. 법제처는 교육부의 부정적 의견(「학교안전사고 예방법」, 「초·중등 교육법」 등에서 ‘통학’과 ‘현장체험학습’을 구분해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험학습을 통학의 범주로 해석’했는데 경직된 법률해석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소홀했던 것 아닌가? 9

3-2. 법제처는 결과 회신과 함께 법령정비 권고의견을 보냈다고 항변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때까지 사실상 문제의식이나 사전 대응이 전혀 없었음. 법제처의 대응이 너무도 소극적이었던 것 아닌가?	10
--	----

이탄희 위원

1. 법제처는 법령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의원실로 대면보고 하였는데, 이를 위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위원실로 보고할 것

< 담당자: 법제정책총괄과 장일수 서기관 ☎ 044-200-6562 >

- 법제처는 법제(심의)관이 부처가 제출한 접수안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한 사항 중 결재 시 참고자료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는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국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앞으로, 개선된 제도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겠음.

2. 법제처가 감사 당일 지적 이후 서면으로 제출한 법제처장의 4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에서도 고가 식당, 인원 미식별, 문제의 집행이 확인됨. 이와 관련하여 투입 예산 환수를 포함한 후속대책, 법제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정상화 방안을 보고할 것

< 담당자: 운영지원과 유선열 사무관 ☎ 044-200-6522 >

< 담당자: 운영지원과 김진석 주무관 ☎ 044-200-6524 >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해당 건에 대한 당일 식사 주문 메뉴, 참석자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록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만, 집행 증빙서류만으로는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인에 한계가 있으므로 붙임과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 강화 계획을 시행하여 업무추진비가 보다 적정하게 집행·관리되도록 하겠음.

[붙임] 법제처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 강화 계획

□ 업무추진비 관리 현황

- 업무추진비는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각 부서에서 예산 집행 시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있으며,

* '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3. 1., 기획재정부)

- 감사부서에서 월 1회 이상 디브레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업무추진비 관리 강화 계획

- (모니터링 강화)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既 추진 중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모니터링을 강화

- (처 내 교육 실시)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 집행 용도, 정보 공개 등 업무추진비 집행 시 주의사항을 각 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정기교육) 각 부서의 예산 집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Q&A), 부적정 집행 사례 등 교육(분기별 1회)
- (수시교육) 각 부서 예산 집행담당자 변경 시 업무추진비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와 별개로 업무추진비 집행 교육 실시

장동혁 위원

1. 법령안의 유형이나 중요도 시급성 등을 감안한 처리 기간을 정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으로 실제 접수부터 처리까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바람.

< 담당자: 법제정책총괄과 장일수 서기관 ☎ 044-200-6562 >

- 법령안의 제·개정 방식, 분량,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첨예함 등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일률적 심사 기간을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법제처는 심사 기간의 단축 및 효율적 입법절차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제 심사 기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 모니터링 및 입법예고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안건으로서 법제처 미접수 법령안에 대해서는 절차 지연 사유 파악 및 관리
 - 입법예고·규제심사 등 입법절차가 미완료된 법령안에 대해 사전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해 접수·관리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제 법령 심사 소요 기간에 대한 정확한 관리 추진
 - 그 외에도 사전심사 및 본심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처리 기간이 단축 되도록 노력하겠음.

2.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현황

< 담당자: 법령데이터혁신팀 하선우 사무관 ☎ 044-200-6784 >

- 법령·판례·해석례 등 각종 법령정보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편리성을 국민들에게 보장해드리는 것은 우리 법제처의 중요한 역할임.
- 이를 위해 법제처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AI 기술과 연계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 * 일상용어와 법령정보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령정보지식베이스 약 70만건을 구축(12월 완료 예정)하고 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 2024년부터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상세한 답변까지 제공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진행할 예정임.
 -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찾고자 하는 법령의 조문뿐만 아니라, 법의 제·개정 취지, 입법연혁, 관련 판례나 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요약·제공받게 되어,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현재 이러한 사업을 위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1. 법제처는 교육부의 부정적 의견(「학교안전사고 예방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통학'과 '현장체험학습'을 구분해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험학습을 통학의 범주로 해석'했는데 경직된 법률해석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소홀했던 것 아닌가?

- 연간 어린이 체험학습에 필요한 45인승 대형버스는 5만대 수준이지만 전국에 등록된 노란버스는 7천대에 불과, 1천만 원 수준의 개조비용 부담과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하면 노란버스 대란은 예견된 상황이었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등의 의견제시나 법제처의 관련 검토가 없었는가?

< 담당자: 행정법령해석과 서유진 사무관 ☎ 044-200-6718 >

- 해당 법령해석 시 경찰청, 교육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외부위원(위원 총 9명 중 외부위원 7명)이 참석한 '22년 제32회 법령해석 심의위원회'(22. 10. 4.) 심의에서 ① 학교 등의 체험학습용 차량 이용상의 현실적 어려움 외에도 ② '통학 등'으로 규정된 법령 문언, ③ 어린이 안전 확보 필요에 대한 입법취지, ④ 어린이 보호 강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어 온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에 이른 것이고,
- 법령해석 결과를 경찰청 등에 회신(22. 10. 28.)하면서 법령정비 권고 의견을 함께 통보하였음.

3-2. 법제처는 결과 회신과 함께 법령정비 권고의견을 보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때까지 사실상 문제 의식이나 사전 대응이 전혀 없었음. 법제처의 대응이 너무도 소극적이었던 것 아닌가?

- 법제처 해석과 경찰청의 노란버스 이용 준수 요청 이후 연쇄적인 체험학습 취소로 학교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고, 전세버스업체와 민간체험학습장 등의 업계 피해도 약 800억원에 이르는 상황. 법제처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 아닌가?
- 노란버스 대란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제도개선까지 한 달 이내로 보완조치가 이루어졌음. 법제처나 관계 부처가 법령해석과 그에 따른 국민 삶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사회적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임. 향후 법령해석에 있어 이러한 점을 염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담당자: 법령해석총괄과 이선미 사무관 ☎ 044-200-6711 >

< 담당자: 행정법령해석과 서유진 사무관 ☎ 044-200-6718 >

□ 위원님의 지적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미리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음.

○ 다만,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 마련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였음.

* 법제처·교육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협의로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규제 완화

-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부처간 협업 및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령해석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더 자세히 살피도록 노력하겠음.
-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